

이 보도자료는 1. 30.(수) 1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대구지방검찰청
안동지청**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공보담당관 지정장 최중무

전화 054-820-4310

보 도 자 료
2019. 1. 30.(수)

자료문의 : 안동지청장실
전화번호 : 054-820-4310
주최임자 : 지정장 최중무

제목 경북 안동 권역 도시가스 요금 조작 비리 수사결과

●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, 안동·영주·봉화·예천·의성·군위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인 A주식회사가 **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약 30만 세대를 상대로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총 34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,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감독기관인 경상북도 공무원, 공인회계사 등 상대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 5,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밝혀내어,**

- 오늘(1. 30.) **A주식회사 대표이사(구속)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사기, 업무상횡령,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하고,**

- A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**상품권,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인회계사 5명을 비위 통보하였음**

※ 경찰에서 송치 전 경상북도 공무원 4명, 다른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비위 통보한 바 있음

● 또한,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북도를 상대로 **‘회계법인 검증 관련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’, ‘도시가스 요금 산정 자료 공개’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**

1 수사 경과

- 2018. 8. 안동경찰서로부터 A주식회사의 업무상횡령 범행 중 일부 혐의에 관한 사건을 송치받아 회계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,
 - A주식회사가 회계 수치를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였음
- 2018. 11. A주식회사 본사 및 지사, 경북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,
 - 압수한 회계 자료 등 각종 디지털증거를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(IDEAS)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어, 2019. 1.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구속하였음

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성명	직업	범죄사실 요지	처분 내용
1	A○○ (68세)	A주식회사 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14년부터 '17년까지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시설 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,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려 약 30만 세대의 소비자들로부터 합계 34억 원 상당 편취 [사기] ▪ '08년부터 '16년까지 경상북도 공무원, 공인회계사 등 상대 로비 용도로 회사 자금 총 1억 5,000만 원 횡령 [업무상횡령] ▪ '12년부터 '18년까지 지주회사인 B주식회사 사주 및 그 아들을 위해 1억 3,900만 원 상당의 서울 하얏트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구입비 및 연회비를 A주식회사 자금으로 대납 [업무상배임] 	구속구공판 (‘19. 1. 30.)
2	B○○ (45세)	A주식회사 前 재무팀장 (現 의성시업소 근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14년부터 '17년까지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시설 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,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려 약 30만 세대의 소비자들로부터 합계 34억 원 상당 편취 [사기] ▪ '15년부터 '16년까지 검증 용역 담당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로비 용도로 회사 자금 183만 원 횡령 [업무상횡령] 	불구속구공판 (‘19. 1. 30.)

3	COO (65세)	A주식회사 관리본부장	▪ '14년부터 '16년까지 경상북도 공무원, 공인회계사 등 상대 로비 용도로 회사 자금 총 5,750만 원 횡령 [업무상횡령]	불구속구공판 (*19. 1. 30.)
4	DOO (52세)	A주식회사 前 총무팀장 (現 CS팀장)	▪ '08년부터 '13년까지 경상북도 공무원, 공인회계사 등 상대 로비 용도로 회사 자금 총 7,100만 원 횡령 [업무상횡령]	불구속구공판 (*19. 1. 30.)
5	EOO (38세)	A주식회사 前 총무팀장 (現 영주지사근무)	▪ '13년부터 '16년까지 경상북도 공무원, 공인회계사 등 상대 로비 용도로 회사 자금 총 6,300만 원 횡령 [업무상횡령]	불구속구공판 (*19. 1. 30.)
6	FOO (59세)	A주식회사 前 기술본부장 (現 퇴사)	▪ '14년 가공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 500만 원 횡령 [업무상횡령]	불구속구공판 (*19. 1. 30.)

3 수사 결과

▣ 도시가스 공급비용 부풀리기 및 일부 유착 실태 확인

- 수사 결과, 1997년부터 경북 안동 권역(안동·영주·봉화·예천·의성·군위)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,
 -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① 배관 설치비 등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소매공급비용 산정자료에 산입하여 적정투자보수를 높이고, ②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실제 판매물량을 축소 신고하여 추정 판매물량과의 차이로 인한 정산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부풀려,
 - 안동 권역 약 30만 세대 주민들로부터 총 34억 원 상당의 도시가스 요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됨

- 그 과정에서, A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 산정 감독 기관인 경상북도 공무원,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설, 추석 등 명절에 상품권을 교부하고 그 외 향응을 제공하였으며,

- 이를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로 가장하거나 가공거래,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총 1억 5,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음

※ 이러한 횡령 금액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음 ☑

※ [붙임 1] '도시가스 요금 산정 체계'

※ [붙임 2] '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 제도개선 건의'

【붙임 1】

도시가스 요금 산정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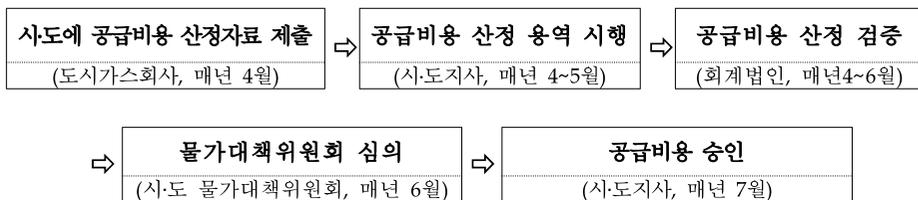
① 도시가스 수요 및 공급 현황

- 도시가스는 1987년 최초 보급된 이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'18년말 현재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이 80%를 상회함
-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정부시책에 따라 권역별로 1개 기업이 독점 공급할 수 있고, 수도권외의 경우 7개 회사, 지방의 경우 시도별로 1~4개 기업이 지역을 분할하여 공급함

②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

-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, 매년 산업자원부(도매) 또는 시도지사(소매)의 승인으로 결정됨
- 소매요금은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, '소매 공급비용'은 시도지사가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용역과 시도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

[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승인절차]



③ '총괄원가 보상방식' 채택

- 현행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 방식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, 판매,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일정액의 이익을 보장하여 기업에게 보상하는 '총괄원가(적정원가+적정투자보수) 보상방식'인바,

[도시가스 단위당 소매공급비용 산정 방식]

$$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[적정원가]} \\ \hline + \text{영업비용} \\ + \text{영업외 비용} \\ - \text{영업외 수익} \\ \pm \text{특별손익} \\ \hline \end{array} + 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[적정투자보수]} \\ \hline \text{요금기저} \\ \times \\ \text{투자보수율} \\ \hline \end{array} = 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[총괄원가]} \\ \hline \end{array} \div 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판매물량} \\ \hline \end{array}$$

⇒ 총괄원가가 높을수록, 판매물량이 적을수록 소매공급비용이 높아지므로,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'총괄원가를 부풀리거나 판매물량을 축소 하려는 유인'이 상존함 ☑

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 제도개선 건의

1 개요

- '총괄원가 보상방식' 체계에서 도시가스회사는 공급비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, 요금 산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'회계법인의 검증' 및 '시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'의 신뢰성, 투명성 확보가 관건임
- 이를 위해, **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경상북도에 건의**하였음

2 회계법인 검증 관련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

- (문제점) 도시가스회사가 제출한 공급비용 산정자료의 검증을 담당하는 회계법인마다 실사 기간, 방식, 깊이 등이 달라 검증 결과의 질적 차이 존재 및 신뢰성 저하
※ '14~'17년 A주식회사의 실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(3곳)은 공급비용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, '18년 실사 담당 회계법인은 공급비용을 부풀린 사실을 발견하였음
- (개선방안) 회계법인이 내실있는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**검증 포인트를 세분화**하고 **표준화**한 '체크리스트'를 마련하여 심층적인 검증 및 그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 있음

3 시도 물가대책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심의 실질화

- (문제점) 현재 시도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회계 비전문가들로서 총괄원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형식적 심의에 그칠 위험 있음

- (개선방안) 소매공급비용 산정 내역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**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**할 필요 있음

4 소매공급비용 산정 내역 공개 및 투명성 강화

- (문제점) 현재 소매공급비용 산정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각 시도는 매년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
※ 도시가스 도매요금(한국가스공사)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원가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
- (개선방안) 소매공급비용 산정의 투명성,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**원가 기초 자료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록 등 공급비용 산정 자료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**할 필요 있음 ☑